

• 수질분야

판례 • 비료공장의 폐수유출량에 대한 원판결이 실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모순에 비롯되어 사실을 오인했다고 판결한 사례

(대법77다2228, 81.12.25)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1967.4.9. 공장을 준공하고 동년 7.9. 암모니아 비료의 생산을 개시하여 인광석 유황 염화칼리나프사 기타 화공약품과 물을 주요 소요자재로 하여 복합비료와 요소비료를 제조하는데 그 생산 실적을 보면 1967년도에는 57,669톤을, 1968년도에는 100페센트 가동하여 267,600톤을 각 생산한 이래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 피고 공장전체가 완전가동할 경우의 물의 총소요량은 1일 130,000톤이고 1일 보충수는 약 8,500톤인 바, 위 8,500톤에 해당되는 물중에서 기계냉각용 공장용수, 보이라 용수등으로 증발소모되는 것과 목욕 및 취사용수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 2,000톤 내지 3,000톤의 물은 폐수로서 바다로 유출되었는데 위 폐수의 유출경로를 보면 피고공장의 비료제조과정에서 나온 물인 폐수는 별지 4 피고공장 폐수 유출도면 표시(ㄱ) 또는 (ㄴ)표시 방향으로 흘러 (가)표시 석고 냉각장으로 들어가서 일부는 (나)표시 냉각장을 거쳐 양수장으로 뽑아 올려져 부족량의 보충수와 함께 인산공장으로 다시 공급되고 그 나머지 물은 위에서 본 2,000톤 내지 3,000톤에 해당하는 공장 폐수인 바 1972.9. 동도면표시 둑을 쌓기전에는 피고 공장 뒷산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수와 합하여 배수관을 통하여 진해시 행암동쪽에서 행암만으로 유출된 사실 위 도면 표시(ㄷ)방향은 공장배수로에서의 물의 흐름의 표시인 바 이 배수로에는 공장취사용수 목욕수 등이 자연수와 합한 소량의 물이 진해시 장천동쪽에서 행암만으로 유출된 사실, 피고공장의 폐수가 혼입되어 있는 행암만의 해수가 조석을 거듭하는 동안 장조류인 때에는 장조류의 지류를 타고 원고들의 본 건어장이 있는 웅동만으로 유입되는 사실 등을 인정함으로

, 위 장천동쪽 배수로위 물은 자연수와 목욕수 취사용수 등 보통의 하수로서 피고공장의 비료제조과정에서 생기는 폐수와는 그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고 그 수량도 소위 피고 공장의 폐수(위 행암동쪽에서 유출된 폐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는 비교도 안될 만큼 소량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체로 피고공장 폐수의 본건 김양식 어장에의 혼입율을 계산하고 그 농도는 안정기준의 범위내에 속하여 원고들의 본건 손해발생과 피고공장 폐수와의 사이에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피건대, 원심검증조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원판결 별지 4 피고공장 폐수유출 도면은 위 검증조서 첨부 제1도면에 의거한 것으로 볼 것인 바 동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산공장에서 작업에 쓰고 나온 물중 석고를 끓은 죽과 같이 반죽하여 석고장으로 운반하는 석고운반용 물을 제외한 물은(ㄴ)표시 방향으로 수로를 따라 (가)표시 냉각장으로 들어가서 자연냉각된다. 냉각된 물은 (나)표시 냉각장을 통해 양수장에서 흡수 인산공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순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나 첨부 제1도면을 보면 수로의 표시는 없고 방향표시만 있으며 1심 제3자 검증조서에 의할지라도 피고공장의 수로는 원심검증조서 첨부 제1도면 표시(ㄷ), (ㄹ)수로 이외의 수로는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므로 이렇다면 원심검증조서에 기재된 (ㄴ)표시 방향의 수로란 다른 수로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 한 결국 (ㄹ)표시 수로로 밖에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것이 (ㄷ)표시 수로에 합하여 장천동쪽 배수로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에서(따라서 위 석고운반용 물을 제외한 물이 (가)표시 석고수 냉각장으로 들어간다고 함은 이해하기 어렵다)피고 공장의 비료제조과정에서 생기는 폐수가 장천동쪽 배수로로도 흘러 배출된다고 보여진다 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장천동쪽으로 흐르는 배수로 [별지 4 피고 공장 폐수유출 도면 표시(ㄷ)부분]의 폐수에는 해수오염원의 주적자인 불소이온 98피피엠이 함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1심 제15차 변론시에 진술한 피고소송대리인의 1975.2.14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장천동쪽 배수로로 유출되는 보이라 공급수 목욕수 각종 기기냉각 및 기타 폐수는 1일 2,773톤이고 행암동쪽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산성폐수는 1일 150톤 내지 500톤 정도

라고(기록 제605장) 진술한 이래 위 양쪽에서의 유출 물의 수량차이에 관하여 그 진술을 변경한 바 없음을 본다. 피고 주장의 위 행암동쪽에서의 폐수유출량은 1 심증인 송판상의 증언에 의하여 입증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장천동쪽의 배수로에는 피고공장의 비료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물의 일부와 기기냉각수등 공업용수의 폐수가 흘러 행암만으로 유출되고 그 수량도 행암동쪽으로 유출되는 것보다 적어도 9 배 내지 18배 이상 많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동시에 원심이 피고공장에서 1972. 9. 뚫을 쌓기 전에 1일 약 2,000톤 내지 3,000톤의 폐수를 행암동쪽에 행암만으로 유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행암동쪽과 장천동 양쪽 배출물의 수질 및 수량을 위와같이 반대로 인정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외면하고 증거의 취사판단을 그릇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모순에 비롯되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84도 1563호, 84. 9. 25)

요지 구 환경보전법(1977. 12. 31 법률 제3078호)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할 시설물은 한가지라도 그 배출오염물질이 여러가지로서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에는 분류된 각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마다 그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가지 오염물질의 배출중 한가지 배출부분에 대한 허가신청에 기한 그 허가만으로는 허가신청이나 허가되지 아니한 나머지 배출부분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① 원심판결은 피고인들(피고인 강○○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9. 12. 20 경부터 1982. 6. 17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445소재 석재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연마가 5대 동력 합계 15마력 상당을 설치하여 조업한 것이라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석재연마기를 설치조업한 당시에 시행되던 구 환경보전법(1977. 12. 31 법률 제3078호) 제2조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는 환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시설을 (가) 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배출시설 (나)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 (다)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하여 각 그 세부규정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는 위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석재연마기는 위 (나)항과 (다)항의 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1978. 8. 22 이 사건 연마기를 설치하면서 위 연마기가 위 (다)항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점은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위 (나)항 배출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일한 배출시설이 위 (나)항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동시에 위 (다)항 배출시설에도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포함적으로 하나의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으면 죽한 것이지 위 (나)항 배출시설설치허가와 위 (다)항 배출시설설치허가라는 등 2개의 허가를 2종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연마기를 비록 위 (다)항 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나)항 부분만에 대하여서라도 설치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이상은 이 사건 연마기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가 규정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바 있는 것이므로 위 (다)항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되어 무죄라고 단정하였다.

② 그러나 위 환경보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공정도,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위 설치허가를 신청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

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 런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설치할 시설물은 한가지라도 그 배출오염물질이 여러가지로 서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에는 분류된 각 오염물질배출에 대해서마다 그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가지 오염물질의 배출중 한가지 배출부분에 대한 허가신청에 기한 그 허가만으로는 허가신청이나 허가되지 아니한 나머지 배출부분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설치허가의 효력이 여러가지 오염물질의 배출 모두에 대하여 미치도록 하려면 분류된 오염물질마다 그 배출량 및 배출방지시설설치 내역서의 첨부 등 그 허가신청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포괄적으로 하나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마기는 위 (나)항과 (다)항의 각 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연마기를 설치하여 조업함에 있어 위 (다)항의 폐수배출부분을 제외한 위 (나)항 부분의 소음 및 진동의 배출부분에 대하여서만 설치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 뿐이니 위 (다)항의 폐수배출부분에 관한 허가없이 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위 연마기를 설치하여 조업한 것으로서 이는 동법 제15조 위반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시에는 동법 제15조 소정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서 논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환경보전법의 적용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세 차장시설의 용수량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89도 1782, 90. 5. 8)

요지 환경보전법의 적용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세 차장시설의 용수량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춘천택시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1985. 11. 12 강원도지사로부터 춘천시 소양로 2가 151의5에서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고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는 당국의 배출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1987. 11. 21부터 자연녹지지역인 춘천시 사동동 371의 5에 소재 춘천택시주식회사 내 면적 19. 92평방미터의 땅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1일 2입방미터 이상의 용수를 사용하여 동 회사 택시를 1일 약 22대씩 세차하는 등 그때부터 1988. 7. 28까지 변경허가 없이 세차장을 경영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의하면, 세차장시설은 면적 20평방미터 이상 또는 용수 1일 2입방미터 이상되어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수 1일 2입방미터 이상이라 함은 실제 1일 평균 물사용량이 2입방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에 관한 증거로서 증인 김상식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세차장의 실제 1일 용수량은 알 수 없고 용수사용 가능량이 1일 3입방미터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부분은 그의 추측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동인이 작성한 1988. 3. 10의 자가측정결과통보서(수사기록 제24정)는 동인이 당시 춘천택시 자가세차장에 폐수유량계가 없어 용수량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위 회사의 폐수처리담당자에게 물어 용수 1일 3입방미터라고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1987. 8. 11 자가측정결과 통보서와는 용수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위 통보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세차장이 1일 2입방미터 이상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증인 박제승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용수 1일 2입방미터의 의미를 실제 평균 사용량이 아닌 시설용량으로 보고 배출시설을 100퍼센트 가동할 때의 배출량인 위 세차장의 시설용량은 1일 2입방미터 이상이 된다는 것이나 위 시행규칙의 용수 1일 2입방미터는 시설용량이 아니라 실제 평균사용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진술부분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용수 1일 2입방미터 이상의 세차장시설을 허가변경없이 경영하였음을 인정하

기에 죽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위 김상식은 위 회사를 위하여 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신우건설소속 분석기사로서 원심 법정에서 위 자가측정결과통보서에 1일 용수량을 3입방미터라고 기재한 것은 그 당시 위 회사에는 폐수 유량계가 없이 위 회사의 폐수처리담당자의 말을 듣고 이에 따라 기재한 것이며 이 사건 세차장의 실제 용수량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당시 위 회사의 시설규모로 보아 1일 3입방미터 정도는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박제승은 춘천시청 사회과 환경관리계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을 적발할 당시 위 회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하수도 배출량 등에 의한 정확한 용수량을 산출할 수는 없었으나 위 회사내에서 실제로 세차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76.38평방미터나 되고 매일 22대의 보유택시를 세차할 경우 실제 1일 평균 용수량이 2입방미터는 초과된다고 판단하여 적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들과 위에서 본 위 회사와 그 세차장의 규모나 시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가측정 결과통보서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져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시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체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구가 아닌 침전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90누714, 90.5.11)

요지 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구가 아닌 침전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에 따른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민사형사소송법 제187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폐수처리장의 구조는 도금과정에서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 및 중금속인 크롬(Cr), 동(Cu), 아연(Zn), 시안(Cn) 등을 화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정화하여 배출하는 시설로서 크롬 집수조, 시안 집수조, 산알카리 집수조 등 3개의 집수조와 각 집수조에 딸린 3개의 반응조 및 응집조, 침전조, 여과조로 구성되어 있고, 위 반응조는 각 2단계의 공정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폐수처리 과정을 보면 종류별로 위 각 집수조에 모인 폐수는 크롬 집수조의 경우 크롬 피에이치 조정조 및 환원조로 구분된 반응조를 시안 집수조의 경우 1차 산화조 및 2차 산화조로 구분된 반응조를 산알카리 집수조의 경우 조정조 및 중화조로 구분된 반응조를 각 거치고 이와 같이 반응조를 거치는 동안 오염물질에 대한 화학처리는 완료되고 그 후 응집조, 침전조, 여과조를 순차로 거치는 동안 부유물질이 응집, 침전, 여과된 후 최종 방류되는 과정을 거치고, 위 침전조는 계단식으로 4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편의상 순차로 제1침전조 내지 제4침전조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 한편 서울환경지청 소속 공무원은 1988.11.4 이 사건의 시료를 채취함에 있어 여과조를 거친 최종 방류구가 아닌 제1침전조와 제2침전조 사이에서 이를 채취하였으나 제1침전조와 제2침전조 사이에서 채취된 물의 화학적 성분과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된 물의 화학적 성분은 동일하다고 인정한 다음, 서울환경지청 소속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함에 있어 최종 방류구가 아닌 제1침전조와 제2침전조 사이에서 채취하였음은 분쟁의 소지를 남기는 시료채취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하겠으나, 위 인정과 같이 폐수가 반응조를 거치는 동안 그 화학적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오염물질인 시안 화합물 및 동 화합물의 성분비는 위 두곳의 물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최종 방류구가 아닌 제1침전조와 제2침전조 사이에서 채취한 시료는 처리공정중에 있는 폐수이므로 이 시료의 분석결과

에 의하여 원고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고 판단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같이 위 반응조에서 시안 화합물 또는 동화합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화학적 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침전조를 흐르는 물이나 최종방류구를 흐르는 물 모두 유해물질의 오염도가 동일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유해물질은 위 반응조에서의 화학적 처리에 의하여서만 정화제거되는 것일뿐 그 이후의 응집조, 침전조 및 여과조에서의 응집, 침전, 여과 등의 물리적 처리에 의하여서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전개되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용한 을 제1호증, 을제18호증의 1,2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고 원심증인 박순자의 증언중에 “반응조를 거치는 동안 폐수에 대한 화학적 처리는 완료되고, 그후 응집조와 침전조, 여과조를 거쳐 최종 방류된다”, “제1침전조와 제2침전조 사이에서 채취된 물의 화학적 성분과 최종방류구에서 채취된 물의 화학적 성분은 동일하다”는 내용의 증언이 있으나 그 화학적 처리로서 정화처리도 끝나고 그 이후의 물리적 처리과정은 오염물질의 처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화학적 처리가 끝났으므로 제1, 제2침전조 사이의 물에 있어서나 최종방류구의 물에 있어서나 화학적 성분이 동일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겠다.

더욱 원고는 폐수처리과정이 우선 반응조에서 폐수에 화학약품을 혼합하여 가볍고 미세한 입자상태의 구리, 시안 등 유해물질이 화학반응에 의해 더 무겁고 큰 화합물이 되도록 한 뒤 그것이 침전조 등을 거치는 동안 그곳에서 화합물이 물에 침전되어 물에서 제거된다 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반응조에서 화학처리한 후 침전조 등을 거치게 하는 것이 폐수처리의 한 과정이라면 반응조 이후에는 폐수처리에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반응조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침전조의 기능 및 작용원리와 침전되는 오염물질의 성분내용이 무엇이며, 나아가 이 사건 오염물질의 정화제거에 있어 위 화학적 처리와 침전 등의 물리적 처리가 상호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욱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제1, 제2침전조 사이를 흐르는 물에 있어서나 최종

방류구를 흐르는 물에 있어서 그 화학적 성분비(오염도)는 동일하다고 하여 제1, 제2침전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에 따라 한 이 사건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시료의 채취지점을 제1, 제2침전조 사이로 인정한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하는 결과가 되었으나 원심인정과는 달리 그 채취지점이 최종방류구인 것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회사의 관리기사이며 위 시료 채취시에 입회한 소외 박순자가 작성한 확인서(을제1호증)에는 이 사건 시료를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소외인은 환경기사 2급의 자격소지자로서 시료의 채취점이 침전조인가 최종방류구인가에 따른 시험성적상의 차이를 모를 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터인데도 원심은 위 박순자가 침전조의 채취물이나 최종방류구의 채취물 모두 그 성분이 동일하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을제1호증에 날인하였다는 증언부분을 받아들여 을제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위 박순자의 증언에 의하여 채취지점을 제1, 제2침전조 사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위 증언중에는 위 제1, 제2침전조 사이의 채취물은 처리가 덜된 폐수였다는 부분이 있어 증언내용이 상호 상치되고 있으므로 을제1호증의 작성경위에 대하여도 더욱 심리하여 본 후에 증거로서의 취사선택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도지사의 구 환경보전법에 의한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원고의 개선작업으로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이 사실이 도지사에게 보고까지 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13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90누4372, 91. 3. 22)

요지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의 하나를 규정하고 있는 구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 13 제1항 제1호 규정중의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내에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가운데 개선명령이 발하여지기 전에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하고 이를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피고 도지사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원고의 개선작업으로 말미암아 정상가동되었고 같은 날 이 사실이 피고에게 보고까지 되었다면 이는 위 시행령 제17조의 13 제1항 제1호의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환경보전법(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으로 1991. 2. 1. 폐지됨)

제17조, 제1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9 제1항, 제17조의 13 제1항 제1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 9 제1항이 배출부과금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기간에 관하여 사업자가 오염물질배출을 환경청장에게 자진신고한 경우와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로부터 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이행완료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경영의 공장에서 방류되는 물속의 오염물질의 정도가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서울환경지청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개선명령이 있기 전인 1989. 4. 17. 정상가동되었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오염물질배출기간은 위 오염물질채취일로부터 원고가 개선명령을 받고서 그 명령이 이행되었음을 보고한 날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오염물질배출기간을 이와같이 보고 이를 기초로 해서 환경보전법의 각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리 환경보전법시행령은 그 제17조의 8에서 같은 조의 12까지에서 배출부과금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의 13 제1항에서 "환경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부과금을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하고 그 제1호로 "제17조의 9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기간 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중의 "동기간 내에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가운데 개선명령이 발하여지기 전에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하고 이를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원고의 위 주장대로 피고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원고의 개선작업으로 말미암아 정상가동되었고 같은 날 이 사실이 피고에게 보고까지 되었다면 이는 위 시행령 제17조의 13 제1항 제1호의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오염물질의 배출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오염물질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채취일로부터 일단 원고가 개선명령을 받고서 그 명령이 이행되었음을 보고한 날까지로 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필경 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배출부과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료제공 : 홍문관〉